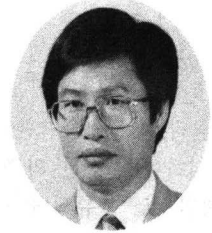


# 의료법인의 세제상 문제점



徐堯

〈서울고려병원 관리차장〉

## 1. 서 언

오늘날에 있어서 복리는 권리로서 추구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사회복지의 필수요건이며, 또한 당연한 권리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문제가 바로 의료문제인 것이다. 의료문제란 단순히 질병퇴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관한 문제로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환자나 그 가족의 사회적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은 질병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서 건강을 유지 보존하는데는 단지 의학적 대처만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의료문제는 곧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인 것이다.

## 2. 의료법인의 운영현황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점진적으

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나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현 보험수가가 병원유지를 위한 적정이윤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병원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아니라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이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국민의료시혜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및 양성에 설립목적이 있는 바와 같이 학교 부속병원이 국민에 대한 의료시혜와 학교교육에 기여한다고 본다면, 의료법인 또한 국민의료시혜와 전문의 양성(전공의 수련병원)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세제상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부속병원등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이 의료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조세형편상 불합리한 실정이다.

## 3. 의료법인의 세제상 개선사항

### 1) 법인세율인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의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출연자에게 배당되거나 상여처분되지 못하고 당해 이익잉여금 자체가 매년 유보되어 정관에 규정한 고유

〈표 1〉 법인 유형별 세액부담 수준

	단위 :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법인세	30	27	5
방·주	9.75	8.78	9.98
계	39.75	35.78	14.88

목적사업에 재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세율구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최고세율 30%)과 의료법인(최고세율 27%)의 세율 수준이 비슷하게 되어있어 매우 높다. 서울대학병원이나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으로 분류되어 5%의 세율적용을 받는 실정이다(표 1).

■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공공법인 유형

- 학술연구기관 : 현대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등 17개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17개
- 공공조합 : 의료보험조합, 농·축·수협 등 28개
- 기타 : 사립대학부속병원, 지방공사병원, 올림픽조직위 등

따라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및 국민의료시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도 공공법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공공법인에 준해서 법인세율이 인하되어야 한다.

2) 공익성 기부금 손금 용인 및 범위 확대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법인등이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할 때에는 전액 손금용인되나, 의료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할 때에는 손금허용이 되지않는 바 현재 의료법인의 실정은 외부적인 지원없이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기부금 수혜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기부금의 손금용인 범위를 비영리공익법인(학교법인포함)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소득의 60/100까지 허용되나, 기타 내국법인(의료법인포함)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소득금액의 10/100 및 자본금의 2/100까지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상 의료법인에 대하여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보아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의학연구비 손금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가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20/100 한도내에서 실비변상적의 성질의 급료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바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는 의료법인 소속의사의 연구보조비에 대해서도 상기 경우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4) 의료기기 관세율의 인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에 따라 의료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또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고급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1987년도 연구에 의하면 400명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토지구입비를 제외하더라도 223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의료기구입비가 74억원으로 전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와같이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비의 학기술과 전자산업의 발달로 점차 더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수년전부터 주요의료기기의 국산화를 기하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의 의료기기는 외국에서 수입되며 대부분 15%라는 높은 관세에 부가가치세, 창고료등의 부대비용을 합하면 수입가격의 34%정도 일반병원에 부담되고, 공공법인의 병원은 이중 50%감면되어 17%정도 부담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병원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어 의료기기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남아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병원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관세를 비과세하거나, 적어도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5%수준 이하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5) 지방세법 중 등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 127조 규정에 의하면 자선, 학술, 기예,

〈표 2〉 급수 증별 구분

구 분	업 태
제 2 종	다른급수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소(병원등이 해당)
제 6 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당,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학교,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신문사, 방송국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의료법인이 서울시,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 시지역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되어있는 바 의료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성에

6) 상수도 증별 조정

현행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의하면, 국공립 및 대학부속병원은 제6종, 기타 병원들은 일반영리 영업소와 동일한 영업용 제2종으로 구분되어 국민의료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병원의 경영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 2 종을 적용 받는 병원이나 제 6 종을 적용받는 국·공립 부속병원 공히 동일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영업용 제 2 종, 후자는 제 6 종으로 구분됨은 형평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사회공익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전국병원의 상수도료는 비추어 당연히 비과세 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 부속병원과 동일한 증별로 통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이외에도 조세감면 규제법상 대학병원이 학교의 교육을 위해 당해 법인에 지출하는 전출금, 지방세법상 사업소세나 하수도세,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채권 매입등에 있어서도 법인 병원들은 대학병원과 달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실시, 의료원가의 급격한 상승, 노사문제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다분히 지나치게 들릴 정도로, 수가의 적정보상이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없이 누가 의료업을 계속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료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계속한다는 지경에 이르는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치않고,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외면한다면,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눈 앞에 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이용자에 대한 적정진료의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병원 진료수준의 유지가 어려워져 의학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재 생산을 위한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위와같이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법인병원들에 대해 이같은 세제상의 차별적용은 사회형평이나 조세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